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백선아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료 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정비(안 제6조).

○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신설 (안 제9조제3항).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반환 절차·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청년담당관

라. 입법예고 : 2026. 10. 21. ~ 2026. 10. 26. (5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용료 반환 절차와 금액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현행 조례는 청년창업센터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 청년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용료 반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료 처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반환 사유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입주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47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재단과『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체결(2018. 10. 24.)

○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관계법령

○「방송법」 제90조의 2 (시청자미디어재단)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 (운영비 등의 분담)

4. 주요내용

1)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요

○ 위　　치 :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

○ 규　　모 : 4,222㎡ (지상3층/지하1층)

○ 운영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연기관)

○ 운 영 비 : 1,572,340천원 [국비 943,404천원 (60%), 시비 628,936천원 (40%)]

○ 주요시설 : 디지털미디어교육실, 드론촬영체험관, 편집실, 사무실 등

○ 주요사업

- 미디어활용교육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교육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2) 2027년 출연 계획

○ 출연 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 출연 금액 : 557,756천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비 중 60%는 방통위, 40%는 남양주시가 각각 분담

- 시 분담금 628,936천원 중 파견인력 1명 인건비 71,180천원를 제외한 금액

《 2027년 센터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A)	경상비 (B)	운영비 (A+B)	비 고
총 소요액	925,340	647,000	1,572,340	
국비 분담	711,800	231,604	943,404	운영비의 60%
지자체 분담	213,540	415,396	628,936	운영비의 40%

5. 기대효과

○ 시민과 미디어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 활용 교육 운영 및 방송제작 시설·장비 제공 등을 통해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와 미디어 복지 실현

○ 1인 미디어시대 수도권 미디어 허브 역할로 남양주시 위상 정립

6. 향후일정

○ 2026. 10 : 부의안건 제출

○ 2026. 12 : 2027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본예산 편성

7.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27년도 운영에 필요한 남양주시 분담금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활용교육과 콘텐츠 제작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 이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 다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재 운영비는 국비 60%, 남양주시 40%로 분담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없는 상황임. 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 분담액 전부를 부담하거나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센터의 광역적 이용 특성을 고려한 운영비 분담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센터 회원과 이용자의 거주지역별 현황 및 사업별 이용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타 지역의 운영비 분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 범위와 수혜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 분담비율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출연금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참여와 시설·장비 이용실적, 미디어 소외계층 지원성과 등을 점검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9. 토론요지

○ 없　　음

10. 심사결과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갑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문가 대리신고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신고자는 신분 노출 없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 가능

* 대리인이 기명신고 접수 후 대리인 명의로 신고

*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노무사 운영 및 예산편성(자문수당) 예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 감사관

라. 입법예고 : 2026. 8. 20. ~ 9. 9.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안은 갑질 신고 시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고자의 익명성과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서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신고자 보호 방식을 갑질 신고에 도입하여 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대리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수당 지급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49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주요 정책연구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남양주시정연구원

○ 출연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출연금액 : 2,764,866천원

○ 출연내용 : 남양주시정연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교부

[출 연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 감	비 고
계	2,764,866	2,528,057	236,809	2026년 대비 9.37% 증액*
인 건 비	1,765,035	1,387,262	377,773	기본급, 수당, 연금·퇴직급여, 평가급(성과급) 등 보수
일반운영비	396,157	446,900	△50,743	임차료, 업무추진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 경비
목적사업비	570,700	627,380	△56,680	연구과제 수행·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기 타 예 산	32,974	66,515	△33,541	협의체 부담금, 예비비, 자산취득비 등

○ 주요 증액 사유

- 인 건 비 : 인력 확대(10명→13명) 및 평가급(성과급) 지급에 따른 증가

3. 참고자료

○ 출연대상 : 남양주시정연구원

○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재단법인)

○ 개 원 일 : 2025. 7. 28.(법인 설립일 2025. 3. 19.)

○ 소 재 지 : 다산순환로 20, A동 10층 35~39호(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 조직구성 : 1팀 2실 1센터

○ 인력현황 : 정원 20명 / 현원 15명(원장 1, 연구직 10, 행정직 4), 파견공무원 3명

○ 주요사업 : 시정 현안 해결, 정책 수요 대응,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분야별 연구기획 및 수행

< 남양주시정연구원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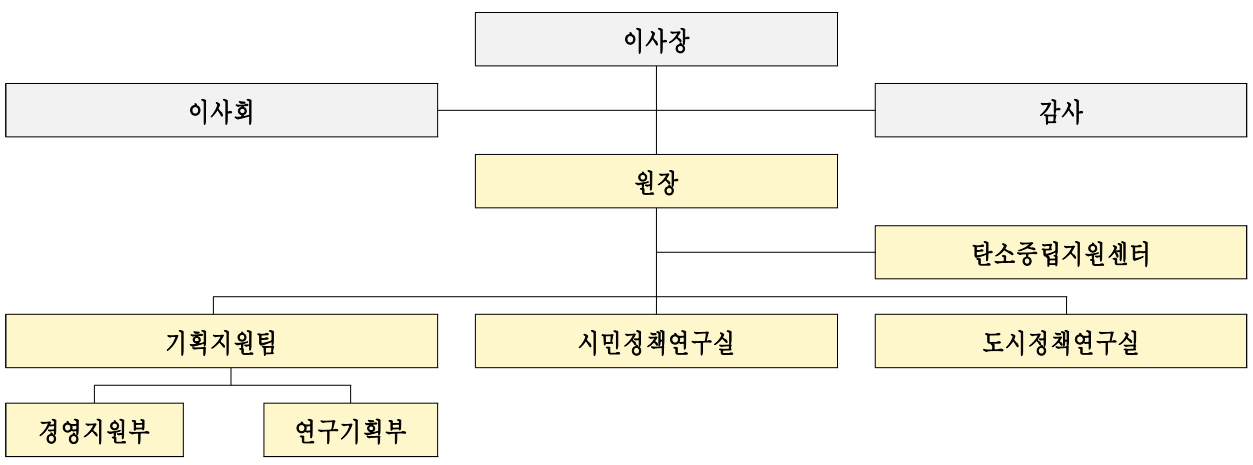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정책기획과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주요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 다만, 2027년도 편성 규모는 이월금을 포함한 2026년도 기관 본예산 대비 9.37% 증가한 수준이나, 시 출연금 기준으로는 59.99% 증가한 규모임. 2026년도 결산 후 이월금 상당액을 출연금에서 감액할 계획인 만큼, 결산 결과와 실제 자금 수요를 반영하여 출연 규모와 분할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연구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연구 수요와 기존 인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채용 시기와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임. 신규 편성된 평가급도 관련 지급기준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연구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연구 및 외부 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과제의 적정성과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7. 토론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0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존 운영 사무에 시설관리를 포함한 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4. 주요내용

1) 시설현황

명칭	소재지	연면적	정원	현원	운영인력
개나리 어린이집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989.38㎡ (지하1층~지상2층)	99명	93명	26명

2) 운영현황

운영방식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
민간위탁	이순화 원장	2024. 4. 1. ~ 2027. 2. 28.	830,761천원

3) 위탁사무 개요

○ 위탁방식 : 행정재산 관리위탁(재위탁)

-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 위탁기간 : 5년(2027. 3. 1. ~ 2032. 2.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및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함

○ 소요예산 : 833,982천원(민간위탁금)

-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뢰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품관리 전반

4) 관리수탁자 선정 계획

○ 선정방식 : 공개모집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

○ 심사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 평가기준 마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사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직장어린이집은 직원의 근무 여건 안정과 직결된 시설로 학사일정 중단 없는 연속적·안정적 보육 지원이 필요함.
경제적 효율성	○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 인력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줄여 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대상으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도·점검)에 따라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함.

구 분	검 토 의 견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종 합 의 견	○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운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따라서 보육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운영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자녀의 보육 지원 및 후생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7.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남양주시청 개나리어린이집은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시설로서, 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함.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인력 관리 역량, 보육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9. 토론요지

○ 없　　음

10. 심사결과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51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조성사업’은 물가상승과 경기도 투자심사에 따른 예비비 반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명·건축 규모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주요내용

1) 주요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가칭)어린아아쿠아도서관 건립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10,847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7,000 - 시비 3,847 (2,215 미확보)	▶	・15,497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7,000 - 기금 1,000 - 도비 1,600 - 시비 5,897 (4,365 미확보)
사업기간	・2016. 7. ~ 2026. 12.	▶	・2016. 7. ~ 2027. 6.

○ 사업비 변경: **증 47억** (당초 108억 ⇒ 변경 155억)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공사비, 인테리어 설계, 감리비 등)

○ 세부 산출기초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95억	인테리어	17억	부대비,대행사업비 (GB, 농지보전부담금)	6.5억
155억	설계용역비	5억	감리비	8억	토지매입비	0.5억
	자산취득	5억	예비비	13억	미식관광플랫폼 (콘텐츠운영 및 실시설계)	5억

2) 운영계획

○ 기구 및 조직: 1팀(조안공공도서관팀) 5명

○ 주요 공간배치

- 1층 : 열람실, 강연실, 기계실
- 2층 : 미식컨텐츠연구소(미식도서 전시 및 열람), 소모임실, 강의실

○ 주요 공간

구분	주요시설		활용방안(안)
	· 미식열람실 · 미식강연실 · 미식 체험 공간	▶	**· 디지털 미식 체험** ICT 기술 연계 실감형 미식 콘텐츠 체험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실감체험)** 조안 특산물(딸기·연근 등) 성장 과정 VR/AR 체험 및 가상 재배 운영 **(미디어)** 미식 크리에이터(유투버 등) 양성 및 미디어 창작지원 **· 지역 정체성 기반 미식·인문 프로그램** **(인문)** 다산 정약용의 '다식(茶食) 인문학' 강연 및 저자 대담 **(교육)** 사계절 미식 독서강좌, 연령별 독서회, 꼬마 탐험대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협력)** 미식 동아리 지원, 학교 연계 '미식 라이브러리 투어' **(행사)** '북(Book) 케이터링' 전시, 가족 타깃 미식 예술 공연(뮤지컬 등)
	· 생태열람실 · 환경열람실		
	· 소모임실 · 강의실		

※ 물의 정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예정

5.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6. 12. 16.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7. 7. 20.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 2021. 4. 15. : 어린이·아쿠아 도서관 사업방침 수립

○ 2021. 0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

○ 2021. 12.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 2022. 4.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관) 용역 착수

○ 2023. 6. : 건축설계용역 착수

○ 2025. 4. : 2026년도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선정 (기금 1,000백만원)

○ 2025. 06. : 위・수탁협약 체결(남양주도시공사)
○ 2025. 08.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7호)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5. 11. : 2026년 도서관건립지원 도비 선정(1,600백만원)
○ 2026. 2.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변경 방침 보고
○ 2026. 03. : 경기도 투자심사, 기술자문위원회, 건축허가 완료
○ 2026. 5. : 대행사업비 2차 교부(2,000백만원),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
○ 2026. 6.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대행사업비 3차 교부(2,600백만원)
○ 2026. 07. : 공사발주・계약 추진(도시공사)
○ 2026. 08. : 건축공사 계약(도시공사)
○ 2026. 09. : 2026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6. 10. : 공사착공
○ 2026. 11.~12. : 기초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 2027. 03.~10. : 공사재개 및 공사준공(예정)
○ 2028. 03. : 도서관 개관(예정)

6.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항공사진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관련부서 : 정약용도서관과

7.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변경안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2016.12월)에서 ‘조안면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으로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제283회 제2차 정례회(2021.12월)에서 ‘어린이・아쿠아 도서관 조성’으로 변경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과 건축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명을 ‘어린이·아쿠아도서관 조성’에서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건축 규모는 당초 연면적 2,000㎡, 지상 3층에서 연면적 1,909.58㎡, 지상 2층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총사업비는 당초 108억 4,700만 원에서 154억 9,700만 원으로 46억 5,000만 원(약 42.9%)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 본 사업은 2016년 최초 의결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된 만큼, 향후에는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아울러, 공공도서관으로 조성 방향이 변경된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목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자원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건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9. 토론요지

○ 없　음

10. 심사결과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의 안 번 호	52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상정)** 2026. 10. 30. / 2026. 11. 4.

(의결) 2026. 11.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생태하천과
·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	진접읍 도시건축과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주요내용

(1)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다산동 4315-2번지 일원

○ 부지면적: 6,173㎡ 중 1,000㎡(하천점용허가 예정)

○ 사업규모: (신축) 지상 1층, 건축연면적 약 200㎡

○ 주요시설: 1층(수변테라스, 주민휴게공간 등), 옥상(특화전망대 등)

○ 사업기간: 2027. 1 ~ 2028. 3.

○ 총사업비: 2,050백만원 (공사비 2,000백만원, 설계비 50백만원)

(단위: 천원)

계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2,050,000	-	2,000,000	50,000	

나)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하천점용면적(㎡)	소유자
다산동 4315-2	하천	6,173	1,000	경기도

※ 해당 부지는 하천구역으로, 사무위임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권자는 남양주시

다) 추진사항

○ 2026. 9. 7. :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2026. 9. 11. : 2027~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6. 9. 18. : 2026년도 제7회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26. 10. :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2027.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7. 8. ~ 2028. 9. : 공사착공 및 준공

라) 기대효과

○ 왕숙천 수변 자원과 연계한 열린 문화·휴게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특화전망대 및 테라스 쉼터 조성을 통한 친수 여가 환경 개선

○ 수변문화공간 시범 모델 정립으로 관내 주요 하천 전역 확산 기반 마련

(2)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가) 사업개요

○ 위　　치: 진접읍 내각리 284-6번지

○ 대지면적: 555㎡ (약 168평)

○ 사업규모: (신축) 지상 1층, 연면적 167㎡ (약 50평)

○ 사업기간: 2026. 1. ~ 2027. 12.

○ 총사업비: 1,268,000천원

(단위: 천원)

계	토지 매입비	철거비	건축비	용역비
1,268,000	590,000	40,000	598,000	40,000

○ 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본예산	제1회 추경	본예산
시비(100%)	**1,268,000**	718,000	250,000	300,00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소요액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시비(100%)	**1,268,000**	20,000	1,248,000	-

나) 기존 마을회관 현황 (소재지: 내각리 277-1 외 3필지)

종별	소유자	지목/구조	면적(규모)	기준가격(원)	비고
토지	내동상록회	대	169㎡	113,145,500	669,500원/㎡
건물	내각1리 마을회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연면적 168㎡	41,633,342	시가표준액

다) 추진사항

○ 2025. 8. 22. : 2026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25. 10. 31. : 2025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6. 3. 30. : 주민의견 제출(토지매입 요청)

○ 2026. 4. 28.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확보(250백만원)

○ 2026. 9. 18. : 2026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원안가결)

구분	당초 심의 내용	**금회 심의내용**	변경 사유
규모	• 부지면적: 555㎡ • 연 면 적: 332㎡ • 층 수: 지상1~2층	• 부지면적: 555㎡ • 연 면 적: 167㎡ • 층 수: 지상1층	• 규모 축소 (332㎡→167㎡)
소요예산	• 718백만원(시비100%) - 부지매입 0 - 공사비 718	• 1,268백만원(시비100%) - 부지매입 590 - 공사비 678	• 550백만원 증가 - 부지매입 비용 - 유사시설 건립단가 적용 공사비 재산정
비고	관리계획 미대상	관리계획 대상	총사업비 10억 이상

○ 2026. 11. : 토지매입 추진 및 설계용역 발주

○ 2026. 12. : 2027년 본예산 추가 확보(300백만원)

○ 2026. 12. : 행정절차 진행(관련 인허가 및 계약심사 등)

○ 2027. 2. ~ 2027. 12. :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추진

5.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항공사진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관련부서 : 생태하천과, 진접읍 도시건축과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안건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본 사업은 왕숙천변 경기도 소유 하천부지(다산동 4315-2 일원)를 점용하여 수변테라스, 주민휴게공간 및 특화전망대 등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 하천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수변공간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부지가 하천구역에 위치하는 만큼, 하천점용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시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지관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조성 효과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수변 여건에 맞는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설 조성과 운영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진접읍 내각리 284-6번지의 토지 555㎡를 매입하고 연면적 167㎡의 마을회관을 신축・이전하려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2억 6,800만 원입니다.

○ 당초에는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마을의 자체 토지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토지매입비 5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한편, 마을회 소유인 기존 마을회관 건축물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신축 마을회관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임. 이에 시비로 추진하는 건축공사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대금의 활용 범위와 마을의 비용 부담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정된 시 재정 여건과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 건립 수요를 고려할 때, 특정 마을의 토지매입부터 건축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과 향후 유사한 지원 요청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가 토지매입비까지 부담하게 된 경위와 지원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 건축물 매각대금을 고려한 마을의 비용 분담 가능성과 시 소유 시설로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마을회관 건립 지원의 범위와 비용 부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8. 토론요지

○ 없　　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3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2026. 12. 31. → 2031. 12. 3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6. 8. 20. ~ 9. 9.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원으로, 기존 융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특히 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기업의 신규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수요가 비용추계에 반영되어 있어, 기업 이전과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었으며, 연장 기간도 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절차 및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비용추계상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차보전금 지출이 같은 기간 이자수입을 42억 6,400만 원 초과하는 만큼, 기금 보유액과 향후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실적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7. 토론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54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7년 출연금 : 695백만원

○ 사업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최대 5억원) :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최대 30억) : 건축비, 매입비, 시설비 등

○ 출연기관 : 경기도

○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982~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7,925	3,842	238	294	826	1,088	837	800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실적	1,728	101,842	1,089	87,717	1,081	76,633	913	64,931	1,022	105,18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위하여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억 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시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 출연액은 도의 2027년도 예산 630억원에 남양주시 협조융자 잔액 비율 약 3.68%와 시 부담률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8억원보다 1억 500만원 감소한 규모임. 이는 2026년 5월 기준 도 전체 협조융자 잔액 중 남양주시 기업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에는 관내 기업의 자금 수요와 지원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를 강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 안 번 호	55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융자 특례보증 제공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형 비제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억원 융자 특례보증 지원

○ 출연개요

- 출연금액 : 900백만원
- 출연기관 : (재)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0-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0,620	6,420	600	700	700	700	700	800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중소기업	52	7,177	51	7,388	44	6,627	37	5,721	51	8,702

4. 향후일정

○ 2026. 12. : 2027년도 예산 편성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 9억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 본 사업은 환급형 구조로 운영되며, 출연금의 4배에 해당하는 보증 한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출연금 9억 원을 통해 36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확보하고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보증 지원실적은 2025년도 51개 업체, 87억 200만 원이며, 2026년도 상반기에는 44개 업체, 73억 2,600만 원으로, 상반기 보증액이 전년도 연간 실적의 약 84.2%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지원실적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담보 부족에 따른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8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규모로, 증액분에 따라 보증 한도가 4억 원 확대되는 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실제 보증 수요와 기존 출연금의 환급·운용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보증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보증 및 대출 실행 현황과 출연금 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7. 토론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 안 번 호	56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제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청년인증기업,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최대 5천만원 융자 특례보증 지원

○ 출연개요

- 출연금액 : 2,100백만원
- 출연기관 : (재)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4,800	3,600	2,000	2,000	2,000	2,100	3,100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소상공인	759	21,625	746	19,725	847	20,931	861	21,955

3. 향후일정

○ 2026. 12. : 2027년도 예산 편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1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출연금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20억 원, 청년인증기업·창업기업인 소상공인 지원에 1억 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출연금의 10배인 총 210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조성하여 소상공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2025년에는 관내 소상공인 861개 업체에 총 219억 5,5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금년에는 특례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을 31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2027년도에는 2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인 만큼, 향후 보증 수요와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7. 토론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57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0. 2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 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액 : 49,224천원

- 산출근거 : 전전년도('25년) 보통세[1]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
- 산출내역 : 492,236,363천원 x (1.0 / 10,000) = 49,224천원

○ 사 업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사업목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

---

1)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난년도수입(시세)

* 한국지방세연구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2011년 설립
- 자치단체 요청 연구과제 수행,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지방세 전문교육, 불복 사건 자문 등 소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47,469	50,579	57,364	64,938	59,032	48,115
비 율	1.3 / 10,000	1.2 / 10,000	1.2 / 10,000	1.2 / 10,000	1.2 / 10,000	1.0 / 1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세정과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922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연이라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과 금액 산정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연구와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지방세 불복·소송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 출연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연구성과와 교육·자문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세정업무 개선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18

2026. 11. 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1.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및 지방자치의 이념을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구현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시민이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구현과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헌법친화도시 실현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5조)

○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6조~제7조)

○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규정(안 제8조~제9조)

○ 헌법교육 등 헌법친화 사업 규정(안 제10조~제13조)

○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 참조)

다. 관련부서 : 자치협력과

라. 입법예고 : 2026. 7. 9. ~ 2026. 7.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의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및 공직자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의 구성, 헌법교육 및 관련 사업,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문화 진흥 등에 관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부합 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헌법친화 사업과 민주시민 실천 프로그램,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의 일부 기능이 기존 주민참여·시민제안·민주시민교육 관련 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취지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성과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수정안 1부.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

2026. 11. 4.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는 유지하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별도 의무를 삭제하여 시의 여건에 맞게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헌법교육의 실시를 재량사항으로 조정하며 교육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는 유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헌법친화 사업 관계 공무원’에서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제4호).

○ 헌법교육 실시 의무를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며 교육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 역사와 헌법재판 사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 대상을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으로 조정하고, 지원 내용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16조)

○ 수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함

남양주시 조례 제 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헌법친화 사업 관계”를

“관계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헌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실현”을 “실현에 필요한 사업”으로,

“또는 단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다.

원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헌법적 가치가 남양주시 행정 전반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 수립·시행한다.
제8조(헌법친화도시 위원회) (생 략)	제8조(헌법친화도시 위원회)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헌법친화 사업 관계 공무원	4. 관계부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헌법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이 헌법의 의미와 기본권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헌법교육의 실시) ① ---------- ---------- ---------- ---할 수 있다.
② 헌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헌법 역사와 헌법재판 사례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 실현에 필요한 사업---------- --- 등에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 ------.